부천시 공고 제2022-2392호

「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그 개정내용을 「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 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> 2022년 9월 26일 부 천 시 장

부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「폐기물관리법」제8조제3항 청결 유지에 대한 임의 규정, 같은법 제68조 제3항 과태료 부과에 대한 강행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상위법령과 통일된 법문으로 일부 개정
-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자에 대한 "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"임의 규정을「폐기물관리법」제68조제3항의 강행 규정에 의거 "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."로 일부 개정
- 「폐기물관리법」제14조의5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안전기준 규정을 신설하여,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작업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산업재해를 예방코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령에 따라 임의·강행규정 문구를 정비함.(안 제3조제1항 및 제7조제2항)
- 나.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하는 경우의 안전기준 규정을 신설함.(안 제10조의2제1항)

- 다.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제16조의3제2항제3호에 대한 안전기준이행 예외 사항을 신설함.(안 제10조의2제2항)
- 라. 일부 조항의 호 번호를 정비함.(안 제11조제4항)
- 마. 재활용가능자원이 아닌 폐기물의 배출요령을 명확히 하고자 해당 대형폐기물의 배출 방법에 관한 조례 조항을 삽입함. (안 별표 2 제1호 다목, 라목, 바목, 사목, 아목 및 제3호 라목)
- 3. 자치법규안: 별도로 붙임

4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일 : 2022년 10월 17일(월)까지

나.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인터넷 등

다. 기재내용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· 반대 여부와 그 이유)
- 2)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라. 제 출 처 : 부천시장(자원순환과, 담당자 공은희)
 - 주 소 : 부천시 벌말로122 (대장동, 부천시 자원순환과)
 - 전화(팩스) : ☎ 032-625-3183, 팩스 : 032-625-3199
 - 전 자 우 편 : air1004@korea.kr

소관부서	자원순환과	직·성명	주무관 공은희	전화번호	032-625-3183
------	-------	------	---------	------	--------------